



교원창업지원 규정

제정일	2014. 5. 1
개정일	2020. 9. 1
개정차수	4차
담당부서	창업교육센터

- 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교원의 창업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조 (정의) 창업이라 함은 학교기업의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가 정하는 벤처기업의 창업과 그 예비활동을 말한다.
- 제 3조 (창업지원대상 교원) 본교의 전임교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다.
- 제 4조 (주요사항의 심의) ① 창업관련 정책의 수립, 교원 창업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, 기타창업에 관한 주요사항은 본교 창업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에서 심의한다. (개정 2015. 6. 1, 2020. 1. 1)
- ②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한다.
1.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
 2. 창업신청자의 적격성 여부
 3. 창업에 따른 소속 부서의 공백(강의, 학생지도 등)에 대한 조치내용
 4. 대학 시설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
 5. 성공자금(벤처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)의 대학 재정기여 계획
 6. 창업 승인과 취소에 관한 사항
 7. 기타 창업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
- ③ 교원의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창업교육센터에서 관장한다. (신설 2015. 6. 1, 2020. 1. 1)
- 제 5조 (창업절차) ①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창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①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1. 창업기술
 2. 창업활동개요
 3. 창업 후 본교가 지원하여야 할 시설·인력 및 장비 등
 4. 창업할 경우 본교에의 재정적 기여 계획
 5. 창업활동으로 인한 교육·연구 공백에 대한 조치내용
 6. 기타 학생 및 본교에 부담이 되는 중요사항
- ③ 총장은 교원의 창업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한다.
- 제 6조 (협약체결) 창업을 희망하는 교원은 승인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본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제 7조 (창업교원의 신분) ① 창업희망 교원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겸직 또는 휴직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② 총장은 겸직 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.
- ③ 창업교원의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겸직기간은 7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경우

총장의 허가를 받아 연장 가능하다. (개정 2020. 9. 1)

④ 창업활동으로 겸직하는 자에게는 일정한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.

⑤ 기타 창업교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적용한다.

제 8조 (창업시기) 본교와 창업협약을 체결한 교직원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.

제 9조 (창업교원의 의무) ① 창업교원은 창업활동에 의한 업무공백에 대하여 성실히 보완하여야 한다.

② 창업교원은 창업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학생에 대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.

③ 창업교원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창업활동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비밀유지 의무) 창업교원은 창업활동으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 (규정위반과 처벌) 창업교원이 이 규정에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활동으로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제12조 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